
교육과정 편성 · 운영 규정



장훈고등학교

교육과정 편성·운영 규정

(2025.03.01. 시행)

교무입학부

제1장 교육과정위원회

제1조(교육과정위원회 설치)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, 학생의 발달과 학사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,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며,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2조(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)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,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교무입학부장, 연구기획부장, 교육과정계(간사), 각 교과부장, 수업계로 구성한다.

1. 간사는 자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학교 구성원에게 그 내용 및 결정 사항을 알린다.

2. 위원은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안전에 대하여 조언 및 심의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.

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.

제3조(교육과정위원회 자문 내용)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①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향 설정

②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모색

③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 수립

④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활동

- 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
- ⑥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계획 수립
- ⑦ 기타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제반 사항

제2장 선택 과목 개설

제4조(선택 과목 운영)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조(선택 과목 개설) 선택 과목은 학생 대상 선택 과목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설한다.

- ① 20명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위 ①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 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해당 교과목의 편성·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
 - 2.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
 - 3.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 및 시간 강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
 - 4. 학교장이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
- ③ 수강 신청 취소, 위탁 교육, 학적 변동 등으로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①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6조 ‘소인수 과목’의 기준에 따라 개설 여부를 판단한다.

제6조 (소인수 선택 과목 및 공동교육과정 과목) ① 학교장은 위 제5조 ①항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.

- 1. 학생들의 진로 역량 제고에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. 교과협의회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
- 3. 학교장이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
- ② 수강 신청 취소, 위탁 교육,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는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.
 - 1. 다수 학생이 선택한 수강 교과목을 우선 개설

2. 학생의 진로 역량 제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우선 개설
 3. 교원 수급, 시설 여건,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
- ③ 소인수 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‘수강 과목 변경 포기’에 대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.

제3장 선택 과목의 변경

- 제7조(선택 과목의 변경)** ① 다음 학년도 학생 선택 과목은 직전 학년도에 수강 신청을 실시하여, 당해 연도에 공표된 최종 수강 신청 기간까지 학생/학부모의 ‘최종 확인’을 완료하고 교과서 주문, 과목별 수강반 수 산정, 시간표 작성,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.
- ② 수강 신청 ‘최종 확인’ 이후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- ③ 다만, 선택 과목에 대한 ‘최종 확인’ 이후에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예외적으로 위 ①항의 과목별 수강반 수, 한 강좌당 수강 인원, 타 학생의 시간표 변동 및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한다.(1회)
- ④ 위 ③항의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(복학, 천재지변, 재입학 등)의 인정 범위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⑤ 위 ③항의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은 해당 학년도 겨울방학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⑥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과 학생 개인 시간표 등을 확정하고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④항의 기간 이후에는 선택 과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- ⑦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이 수강 중(학기가 시작된)인 당해 학년도(학기)의 선택 과목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.

제8조(과목 변경 절차) ① 선택교육과정 변경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.

1. 선택 과목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1차 상담한다.
2. 학생 및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과목 선택 변경원과 서약서를 제출한다.
3. 학년 부장은 면담 내용을 토대로 선택 변경의 적합성을 파악한다. 필요 시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4. 교무입학부장은 면담 내용을 토대로 선택 변경의 적합성을 파악한다. 필요 시 학생 및 학

부모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
5. 교감은 면담 내용을 토대로 선택 변경의 적합성을 파악한다.
6.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검토·심의 및 학교장의 허가로 과목을 변경한다.

제9조(변경 기간에서의 과목 변경) ① 제7조 ③항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.

1. 담임 교사와의 상담(필요 시 학년부장, 교무입학부장과 상담)
2. 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제출
3. 학생과 학부모의 서약서 제출
4.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
5. 학교장의 허가

제10조(학교의 필요에 따른 과목 변경) 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생에게 수강 과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.

1. 교육과정 담당 부서 및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검토
2. 학생과 학부모 면담 및 동의서 받기
3. 학교장의 허가

제4장 공동교육과정

제11조(기본 원칙)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편성·운영 및 개설 과목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지만,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(공유형, 거점형, 온라인형)을 통해 학생 진로에 맞는 학습을 안내하고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학점 이수를 인정한다.

제12조(운영 방침) ① 학생의 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 편성(1학년~3학년)된 과목에 대해서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에서 수강을 허용하지 않는다.

- ② ①항에서 학교 교육과정에는 편제되어 있으나 학생 수 부족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을 허용한다.
- ③ 다른 학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위계가 있는 교과목인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수강하도록 지도한다.
- ④ 다른 학교에 개설된 과목 수강을 위한 수업 참여는 학교의 교육과정 일과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.
- ⑤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출결은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477호)」의 [별표8](출결 상황 관리 등)에 준하여 인정한다.
- ⑥ ⑤항에서 방과 후 및 토요일에 참여하는 경우 나이스와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출결 관리로 처리한다.
- ⑦ 방과 후·주말·방학 기간 중에 운영하는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의 수업 일수를 추가로 산출(인정)하지 않는다.
- ⑧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(공유형, 거점형, 온라인형)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(공유형, 거점형, 온라인형) 운영 및 참여 규정에 의해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.¹⁾

부 칙

제1조 (시행)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1) 2024학년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(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, 2024. 3.)